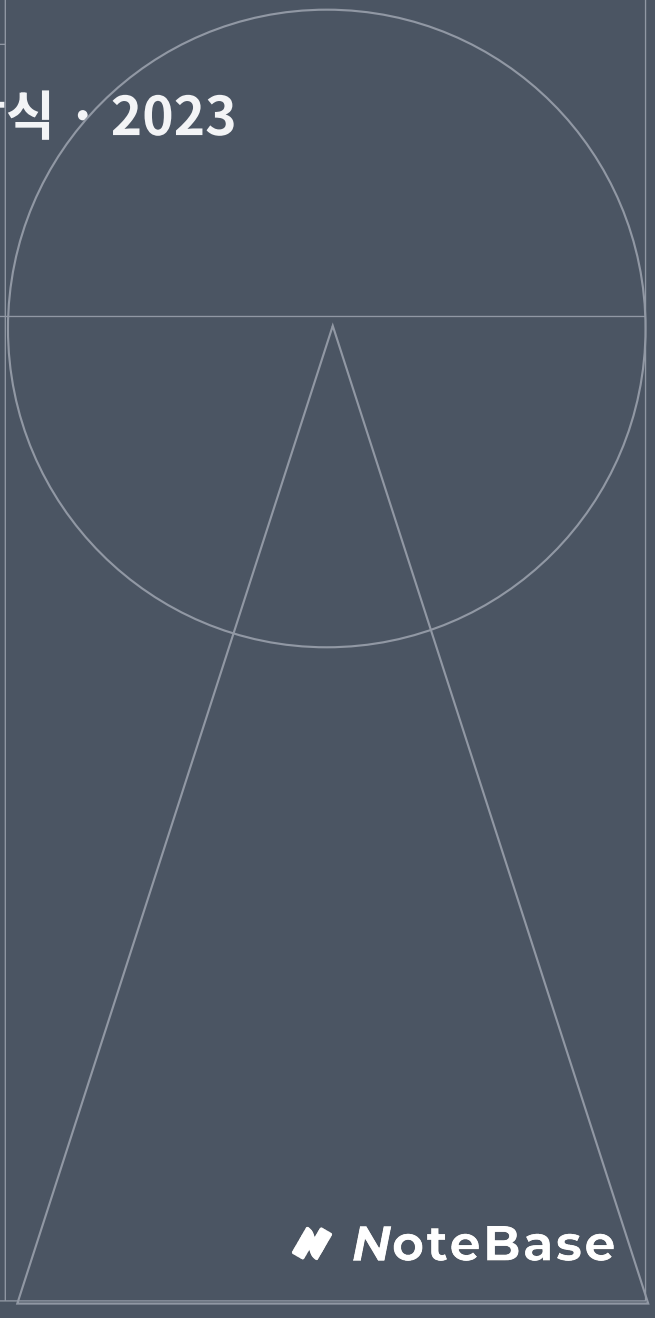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계리직/9급 · 우편상식 · 2023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계리직/9급 · 우편상식 · 2023

공무원/계리직/9급 · 우편상식 · 2023

1. 국내 요금수취인부담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요금수취인부담 이용계약의 해지 이후 발송 유효기간 내에 발송된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반환한다.
 ② 우편요금은 부가취급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의 110%이며, 합계금액에 원 단위가 있을 경우에는 절사한다.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계약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발송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 배달우체국장(계약등기와 등기소포는 접수우체국장)과의 계약을 통해 그 우편요금을 발송인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수취인 자신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요금수취인부담 우편물의 계약 상대방, 발송 유효기간, 계약 해지 후 처리 및 요금 산정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계약이 해지된 경우와 발송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요금수취인부담은 배달우체국장과의 계약을 통해 우편요금을 발송인이 아니라 수취인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계약등기와 등기소포는 접수우체국장과 계약한다.

핵심 구분

발송 유효기간이 지난 뒤 발송한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반환한다. 반면 이용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발송 유효기간 안에 발송된 우편물은 수취인에게 배달하며, 수취인은 그 수취를 거부할 수 없다. 발송 유효기간은 계약일부터 2년이 원칙이지만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은 2년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계약이 해지된 뒤라도 발송 유효기간 안에 발송된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수취인에게 배달한다. 수취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틀린 표현: 발송인에게 반환한다.
올바른 표현: 수취인에게 배달한다.

② O
요금수취인부담 우편물의 우편요금은 부가취급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의 110%이며, 합계금액에 원 단위가 생기면 그 원 단위를 절사한다.

③ O
발송 유효기간은 계약일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은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④ O
요금수취인부담은 원칙적으로 배달우체국장과 계약하여 발송인 대신 수취인이 우편요금을 부담하는 제도이다. 계약등기와 등기소포는 접수우체국장과 계약한다.

오답 포인트

①의 '계약 해지 이후'를 '발송 유효기간 경과 후'와 혼동하기 쉽다. 반환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계약 해지 자체가 아니라 발송 유효기간 안에 발송되었는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발송 시점이 유효기간 안인지 확인한다. 유효기간 안이면 계약 해지 후에도 수취인에게 배달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뒤 발송했으면 발송인에게 반환한다. 이어서 계약 상대방, 2년 예외 기관, 110%와 원 단위 절사를 각각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해지 후라도 기간 안이면 배달, 기간이 지나면 반환이다.

NoteBase

2. 국내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 및 외부표시(기재)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여섯자리 우편번호 작성란이 인쇄된 봉투를 이용한 통상우편물은 모두 규격외로 취급한다.

② 무게가 50g이고 누르지 않은 자연 상태에서 두께가 10㎜인 경우에는 규격외로 취급한다.

③ 봉투의 세로 크기가 최소 140㎜, 최대 235㎜(허용오차 ±5㎜)인 경우에는 규격으로 취급한다.

④ 봉투의 모양이 직사각형 형태로 재질은 종이이며 색깔이 검은색인 경우에는 규격외로 취급한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봉투에 넣어 봉함하거나 포장하여 발송하는 국내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크기·모양·중량·재질·우편번호 기재 요건과 권장사항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규격우편물은 고시가 정한 크기, 모양, 중량, 재질, 표면 및 기재 방식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통상우편물이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규격외 우편물로 취급한다.

핵심 구분

「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 및 우편물의 외부표시(기재) 사항」에 따르면 봉투형 규격우편물은 세로 90 ~ 130*mm*, 가로 140 ~ 235*mm*이며 각각 허용오차는 ±5*mm*이다. 두께는 누르지 않은 자연 상태에서 0.16 ~ 5*mm*, 중량은 3 ~ 50*g*이어야 하고, 모양은 직사각형이며 재질은 원칙적으로 종이여야 한다. 색상은 반사율 70% 이상인 흰색이나 밝은 색이 권장되지만, 검은색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규격외가 되는 것은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여섯 자리 우편번호 작성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규격외가 되는 것은 아니다. 2019년 10월 이전에 여섯 자리 작성란이 인쇄된 봉투는 현행 다섯 자리 우편번호를 왼쪽부터 한 칸에 하나씩 쓰고 마지막 칸을 비워 두면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 틀린 표현: '모두 규격외로 취급한다'
- 올바른 표현: '2019년 10월 이전에 여섯 자리 우편번호 작성란이 인쇄된 봉투는 다섯 자리 우편번호를 왼쪽부터 기입하고 마지막 칸을 비워 두며, 다른 요건도 충족하면 규격으로 취급할 수 있다.'

② O
- 중량 50*g*은 허용 범위의 최댓값이지만, 누르지 않은 자연 상태의 두께 10*mm*는 허용 최댓값 5*mm*를 초과한다. 따라서 규격외로 취급한다.

③ X
- 140 ~ 235*mm*는 세로가 아니라 가로의 규격 범위이다. 세로의 규격 범위는 90 ~ 130*mm*이고 허용오차는 ±5*mm*이다.
- 틀린 표현: '봉투의 세로 크기가 최소 140*mm*, 최대 235*mm*(허용오차 ±5*mm*)'
- 올바른 표현: '봉투의 세로 크기는 최소 90*mm*, 최대 130*mm*이고, 가로 크기는 최소 140*mm*, 최대 235*mm*이며 각각 허용오차는 ±5*mm*이다.'

④ X
- 직사각형 형태와 종이 재질은 규격요건에 맞는다. 흰색이나 밝은 색은 권장사항이므로, 봉투가 검은색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규격외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주소·우편번호의 판독과 기계처리 등 다른 필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 틀린 표현: '색깔이 검은색인 경우에는 규격외로 취급한다'
- 올바른 표현: '검은색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규격외로 취급하지 않으며, 다른 필수 규격요건의 충족 여부를 함께 판단한다.'

오답 포인트

③의 가로 규격 140 ~ 235*mm*를 세로 규격으로 바꾸어 놓은 표현과, ④의 권장 색상을 필수 요건처럼 제시한 표현이 함정이다. 또한 ②에서는 중량 50*g*만 보고 규격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두께 10*mm*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봉투형 통상우편물은 세로·가로·두께·중량을 각각 따로 대조한다. 하나라도 상한이나 하한을 벗어나면 규격외이며, 권장사항은 그 자체만으로 규격외를 결정하는 필수 요건과 구별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봉투형 규격은 '세로 90 ~ 130*mm*, 가로 140 ~ 235*mm*, 두께 0.16 ~ 5*mm*, 중량 3 ~ 50*g*'으로 묶어 기억한다.

NoteBase

3. 민원우편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한 민원우편 취급용 봉투(발송용, 회송용)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회송용 민원우편물은 우체국 취급담당자가 인장 또는 자필서명하여 봉함하여야 한다.

③ 민원발급 수수료와 회송할 때의 민원발급 수수료 잔액을 현금으로 우편물에 봉입하여 발송할 수 있다.

④ 발송인은 민원우편 회송용 취급요금(50g규격요금+등기취급수수료+익일특급수수료)을 접수 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민원우편의 전용 봉투, 현금 봉입, 왕복 취급요금 선납 및 회송용 우편물의 봉함 주체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우체국 취급담당자와 민원발급기관 취급담당자의 역할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민원우편은 민원인이 우체국을 통하여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민원발급기관이 발급한 서류를 다시 우편으로 회송하는 서비스이다.

핵심 구분

민원우편의 발송과 회송에는 민원우편 취급용 봉투를 사용하고, 발송인은 접수할 때 발송용과 회송용 취급요금을 함께 선납한다. 회송용 민원우편물은 우체국 취급담당자가 아니라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보내는 민원발급기관의 취급담당자가 인장 또는 자필서명하여 봉함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한 민원우편 취급용 봉투인 발송용 봉투와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

② X
회송용 민원우편물의 봉함 주체는 우체국 취급담당자가 아니라 민원발급기관의 취급담당자이다.
틀린 표현: '우체국 취급담당자가 인장 또는 자필서명하여 봉함'
올바른 표현: '민원발급기관의 취급담당자가 인장 또는 자필서명하여 봉함'

③ O
민원발급 수수료는 신청서와 함께 현금으로 봉입할 수 있고, 민원발급기관이 서류를 회송할 때 남은 수수료 잔액도 현금으로 봉입하여 돌려보낼 수 있다.

④ O
민원우편은 접수할 때 왕복 취급요금을 미리 받으므로, 발송인은 회송용 취급요금인 50g 규격요금·등기취급수수료·익일특급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②는 '회송용'이라는 말 때문에 우체국 직원이 봉함한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실제로 회송할 민원서류를 봉입하는 곳은 민원발급기관이므로 그 기관의 취급담당자가 봉함 책임을 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민원우편의 처리 주체를 단계별로 나눈다. 접수와 우편 취급은 우체국, 민원서류의 발급과 회송 봉함은 민원발급기관, 왕복 취급요금의 선납은 발송인의 역할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회송 봉함은 우체국이 아니라 민원발급기관, 왕복 요금은 접수 때 선납이다.

NoteBase

4. <보기>에서 국내우편물 배달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ㄱ. 익일특급우편물의 배달기한은 접수한 다음날까지이다.
ㄴ. 관보규정에 따른 관보는 배달기한 적용의 예외 대상이다.
ㄷ. 등기통상과 등기소포우편물의 배달기한은 접수한 다음날까지이다.
ㄹ. 교통 여건 등으로 인해 우편물 운송이 특별히 어려운 곳은 관할 우편집중국장이 별도로 배달기한을 정하여 공고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국내우편물의 종류별 송달기준과 그 적용 예외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익일특급·등기통상·등기소포의 기준일을 구별하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기준을 따로 공고하는 주체를 확인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송달기준은 우편물을 접수한 다음 날부터 배달할 날까지 걸리는 기준 일수를 말한다. 오늘출발 우편물 접수마감시간까지 접수한 우편물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핵심 구분

ㄱ은 맞다. 익일특급은 원칙적으로 접수한 다음 날 배달한다.
ㄴ은 맞다. 「관보규정」에 따른 관보를 우편물 정기발송계약에 따라 발송하면 송달기준 적용의 예외가 인정된다.
ㄷ은 틀리다. 등기통상은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배달하고, 등기소포는 접수한 다음 날 배달한다. 두 우편물의 기준이 같지 않다.
ㄹ은 틀리다. 도서·산간오지 등 운송이 특히 곤란한 지역의 송달기준을 달리 정하여 공고하는 주체는 관할 지방우정청장이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ㄱ과 ㄴ은 모두 옳으므로 정답 조합이다. 익일특급은 원칙적으로 다음 날 배달하며, 관보는 정기발송계약에 따라 발송하는 경우 송달기준 적용의 예외가 인정된다.
② X — ㄷ과 ㄹ은 모두 틀리다. 틀린 표현은 '등기통상과 등기소포가 모두 접수한 다음 날까지 배달된다'와 '관할 우편집중국장이 공고한다'이다. 올바른 표현은 '등기통상은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등기소포는 접수한 다음 날 배달하며,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별도 기준을 공고한다'이다.
③ X — ㄱ과 ㄴ은 맞지만 ㄷ이 틀리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등기통상과 등기소포의 배달기한은 접수한 다음 날까지이다'이다. 올바른 표현은 '등기통상은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이고, 등기소포는 접수한 다음 날 배달한다'이다. 따라서 올바른 조합은 ㄱ, ㄴ이다.
④ X — ㄱ과 ㄴ은 맞지만 ㄹ이 틀리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관할 우편집중국장이 별도로 배달기한을 정하여 공고한다'이다. 올바른 표현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지역별 송달기준을 달리 정하여 공고한다'이다. 따라서 올바른 조합은 ㄱ, ㄴ이다.

오답 포인트

ㄷ에서 '등기'라는 공통 명칭만 보고 등기통상과 등기소포의 송달기준이 같다고 판단하기 쉽다. 또한 ㄹ에서는 실제 운송을 담당하는 우편집중국과 별도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는 지방우정청을 혼동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우편물의 종류를 익일특급·등기통상·등기소포로 나누어 기준일을 확인한다. 이어 예외 지역에 관한 선지는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는 주체가 관할 지방우정청장인지'를 확인한다. 조합형에서는 ㄱ~ㄹ의 참·거짓을 먼저 확정한 뒤 선택지 조합과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익일특급·등기소포는 다음 날, 등기통상은 3일 이내, 곤란 지역 공고는 지방우정청장이다.

NoteBase

5. 국내소포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로, 세로, 높이를 합하여 35㎝ 미만인 소형포장우편물은 소포우편물로 구분하여 취급한다.

② 일반소포우편물은 우표납부로 우편요금 결제가 가능하며 반송 시 반송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③ 최소용적은 평면의 크기가 길이 14㎝, 너비 9㎝ 이상, 원통형으로 된 것은 직경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23㎝이다.

④ 고객이 등기소포우편물 1개의 접수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우체국 창구에서 요금즉납으로 결제한 경우, 우편요금의 3%를 감액받는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국내소포우편물의 분류, 최소용적, 요금 납부방법 및 창구 등기소포 요금 감액 기준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소형포장우편물은 물품을 넣은 작은 우편물이지만 우편물의 종류상 소포우편물이 아니라 통상우편물로 취급되는 우편물이다.
접수정보 사전 제공은 모바일·인터넷우체국 등으로 발송인·수취인 등의 정보를 창구 접수 전에 입력하는 것이다.

핵심 구분

소형포장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은 크기 기준이 맞닿아 있어도 서로 다른 우편물 종류이다. 소형포장우편물은 가로·세로·두께의 합이 35*cm* 미만인 통상우편물이고, 소포우편물은 세 변의 합이 35*cm* 이상이어야 한다. 소포의 최소용적은 직육면체형이면 가로 17*cm* 이상·세로 12*cm* 이상이면서 세 변의 합이 35*cm*이고, 원통형이면 지름 3.5*cm* 이상·길이 17*cm* 이상이면서 지름의 2배와 길이의 합이 35*cm*이다. 창구 등기소포는 접수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요금을 즉납할 때 1~2개도 우편요금의 3%를 감액받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35*cm* 미만인 우편물을 소형포장우편물로 보는 취지는 맞지만, 이를 소포우편물로 구분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틀린 표현: 소포우편물로 구분하여 취급한다.
올바른 표현: 소형포장우편물은 통상우편물로 구분하여 취급한다.

② X
우표납부는 우표를 우편물에 붙이지 않고 창구에 제출하여 요금을 내는 방식이고, 우표첩부는 우표를 우편물 표면에 직접 붙이는 방식이다. 일반소포는 우표첩부는 가능하지만 우표납부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선지의 요금 결제 방법이 틀렸다. 일반소포는 등기취급이 아니므로 반송취급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맞다.
틀린 표현: 우표납부로 우편요금 결제가 가능하다.
올바른 표현: 일반소포는 현금, 우표첩부, 신용카드 결제 등의 방법으로 요금을 납부한다.

③ X
제시된 가로 14*cm*, 세로 9*cm*, 원통형 합계 23*cm*는 통상우편물의 최소용적 기준이다. 소포우편물의 최소용적 기준과 바뀌었다.
틀린 표현: 소포우편물의 최소용적은 가로 14*cm*, 세로 9*cm* 이상이고 원통형은 지름의 2배와 길이의 합이 23*cm*이다.
올바른 표현: 소포우편물은 가로 17*cm* 이상·세로 12*cm* 이상이면서 세 변의 합이 35*cm*이고, 원통형은 지름 3.5*cm* 이상·길이 17*cm* 이상이면서 지름의 2배와 길이의 합이 35*cm*이다.

④ O
등기소포 1개의 접수정보를 모바일·인터넷우체국 등으로 사전에 제공하고 우체국 창구에서 요금을 즉납하면 1~2개 구간에 해당하여 우편요금의 3%를 감액받는다.

오답 포인트

①에서는 소형포장우편물을 크기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소포우편물이라고 생각하기 쉽고, ③에서는 통상우편물의 최소용적 수치를 소포우편물 기준으로 착각하기 쉽다. ④는 다량 발송만 감액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함정이지만, 접수정보 사전 제공과 요금즉납 요건을 갖춘 창구 등기소포는 1개부터 3% 감액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소형포장우편물은 통상우편물이라는 분류를 확인한다. 다음으로 최소용적 수치가 통상우편물의 14*cm*·9*cm*·23*cm*인지, 소포우편물의 17*cm*·12*cm*·35*cm*인지 구별한다. 감액 문제에서는 우편물 종류, 접수정보 사전 제공 여부, 결제 방식과 접수 개수를 함께 확인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소형포장은 통상, 소포 최소는 세 변 합 35*cm*, 창구 등기소포 사전접수 1~2개는 3% 감액이다.

NoteBase

6. <보기>에서 보험취급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ㄱ. 통화등기로 취급할 수 있는 대상은 강제 통용력이 있는 국내 통화에 한정한다.
ㄴ. 외화등기는 전국 우체국에서 익일특급 배달 불가능 지역을 제외하고 접수가 가능하다.
ㄷ. 물품등기의 물품 가액은 발송인이 정하며, 취급 담당자는 가액 판단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
ㄹ. 안심소포의 가액은 300만 원 이하의 물건에 한정하여 취급하며, 취급한도액을 초과하는 물품은 어떤 경우에도 취급할 수 없다.
ㅁ. 사용된 유가증권류, 기프트카드 등에 대하여 보험취급을 원하는 경우, 유가증권등기로 취급할 수 없으나 물품등기로는 접수가 가능하다.

① ㄱ, ㄴ, ㄷ
② ㄴ, ㄹ, ㅁ
③ ㄱ, ㄷ, ㄹ
④ ㄱ, ㄷ, ㅁ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보험취급우편물의 종류별 대상, 접수 범위, 신고가액 및 취급한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외화등기의 접수우체국과 배달우체국을 혼동하지 않고, 취급한도를 넘는 물품의 예외와 사용된 유가증권류의 취급 방법을 아는 것이다.

용어 풀이

보험취급우편물은 우편물이 망실되거나 훼손되는 경우 신고하거나 표시한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취급하는 우편물이다. 통화등기는 국내통화, 물품등기는 귀중품 등의 물품, 유가증권등기는 수표·상품권 등 유가증권, 외화등기는 계약으로 정한 외국통화를 대상으로 한다.

NoteBase

핵심 구분

ㄱ O: 통화등기의 대상은 강제통용력이 있는 국내통화이다.
ㄴ X: 외화등기의 접수우체국은 계약에 따라 지정된 우체국이다. 전국 우체국에서 가능하다는 내용은 접수가 아니라 배달 범위에 관한 것이며, 익일특급 배달 불가능 지역은 배달 대상에서 제외된다.
ㄷ O: 물품등기의 신고가액은 발송인이 정하므로 취급 담당자가 물품의 실제 가격을 평가하여 가액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ㄹ X: 안심소포의 신고가액은 300만원 이하이지만, 실제 가액이 취급한도를 넘더라도 발송인이 취급한도액까지만 기록하여 취급해 달라고 요구하면 접수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취급할 수 없다'는 표현이 틀리다.
ㅁ O: 이미 사용된 유가증권류나 기프트카드는 유가증권등기로는 취급할 수 없지만, 보험취급을 원하면 물품등기로 접수할 수 있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ㄷ, ㅁ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ㄱ과 ㄷ은 옳지만 ㄴ이 틀리므로 옳은 설명만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틀린 표현: 외화등기는 전국 우체국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올바른 표현: 외화등기는 계약에 따라 지정된 우체국에서 접수하며, 전국 우체국이라는 범위는 익일특급 배달 불가능 지역을 제외한 배달우체국에 관한 설명이다.

② X
ㅁ은 옳지만 ㄴ과 ㄹ이 틀리므로 옳은 설명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 외화등기는 전국 우체국에서 접수할 수 있고, 취급한도를 넘는 안심소포는 어떤 경우에도 취급할 수 없다.
올바른 표현: 외화등기는 지정된 계약우체국에서 접수하며, 한도 초과 물품도 발송인이 취급한도액까지만 기록하도록 요구하면 안심소포로 취급할 수 있다.

③ X
ㄱ과 ㄷ은 옳지만 ㄹ이 틀리고, 옳은 ㅁ이 빠져 있다.
틀린 표현: 취급한도액을 초과하는 물품은 어떤 경우에도 안심소포로 취급할 수 없다.
올바른 표현: 발송인이 취급한도액까지만 기록하여 취급해 달라고 요구하면 한도 초과 물품도 안심소포로 접수할 수 있다.

④ O
ㄱ은 통화등기의 대상, ㄷ은 물품등기의 신고가액 결정 주체, ㅁ은 사용된 유가증권류와 기프트카드의 물품등기 취급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ㄱ, ㄷ, ㅁ을 고른 ④가 정답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ㄴ의 ‘전국 우체국’은 외화등기의 접수 범위가 아니라 배달 범위이다. 또한 ㄹ의 ‘어떤 경우에도’는 취급한도액까지만 기록하는 예외를 지워 버린 절대적 표현이다. 접수와 배달, 원칙과 예외를 바꾸어 놓은 것이 이 문제의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보험취급우편물 문제에서는 먼저 대상물, 접수우체국, 가액 결정 주체, 취급한도를 각각 분리한다. ‘전국 우체국’이 나오면 접수인지 배달인지 확인하고, ‘어떤 경우에도’가 나오면 취급한도액까지만 기록하는 예외가 있는지 확인한다. 사용을 마친 유가증권류는 유가증권등기가 아니라 물품등기 대상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통화는 국내통화, 외화는 지정국 접수·전국 배달, 물품 가액은 발송인이 정한다. 한도 초과는 한도액까지만 기록하면 취급할 수 있고, 사용한 유가증권류는 물품등기로 취급한다.

NoteBase

7. 국내우편요금 감액제도 중 환부불필요 감액을 받기 위한 1회 발송 최소 우편물 수량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요금별납 서적우편물 2천통

② 요금후납 다량우편물 1천통

③ 요금별납 상품광고우편물 2천통

④ 요금후납 상품광고우편물 1천통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환부불필요 감액의 적용 대상과 1회 발송 최소 우편물 수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서적우편물에는 이 감액이 적용되지 않고, 다량우편물과 상품광고우편물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용어 풀이

환부불필요 우편물이란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더라도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내지 않도록 표시한 우편물이다.

핵심 구분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요금 감액제도 기준상 환부불필요 감액은 다량우편물과 상품광고우편물에 적용된다. 두 우편물 모두 1회 발송 최소 수량은 요금별납 2천 통, 요금후납 1천 통이다. 서적우편물은 환부불필요 감액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이 감액에 관한 최소 수량 자체가 없다.

선지별 해설

① X

- 서적우편물은 환부불필요 감액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요금별납 2천 통'이라는 최소 수량을 적용할 수 없다.
- 틀린 표현: 요금별납 서적우편물 2천 통
- 올바른 표현: 서적우편물은 환부불필요 감액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② O

- 다량우편물의 환부불필요 감액을 위한 1회 발송 최소 수량은 요금후납의 경우 1천 통이다.

③ O

- 상품광고우편물의 환부불필요 감액을 위한 1회 발송 최소 수량은 요금별납의 경우 2천 통이다.

④ O

- 상품광고우편물의 환부불필요 감액을 위한 1회 발송 최소 수량은 요금후납의 경우 1천 통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서적우편물에도 구분 감액의 요금별납 2천 통·요금후납 1천 통 기준이 있어 이를 환부불필요 감액 기준으로 착각하기 쉽다. 환부불필요 감액에서는 먼저 우편물의 종류가 적용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환부불필요 감액 문항에서는 먼저 적용 대상을 다량우편물·상품광고우편물로 좁힌 뒤, 납부 방식에 따라 요금별납 2천 통과 요금후납 1천 통을 대응시킨다.

암기 포인트

환부불필요는 다량·상품광고만, 별납 2천·후납 1천이다.

NoteBase

8. 국내우편물의 지연배달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 및 금액으로 옳은 것은?

① 준등기: D+3일 배달분부터 우편요금

② 등기통상: D+5일 배달분부터 우편요금과 등기취급수수료

③ 등기소포: D+3일 배달분부터 우편요금

④ 익일특급: D+1일 배달분부터 우편요금과 국내특급수수료

정답 2번

쟁점

국내우편물이 늦게 배달되었을 때 우편물 종류별로 손해배상이 시작되는 배달일과 배상 범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D는 우편물 접수일을 뜻한다. D+5일 배달분부터라는 말은 접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해당 배달일 이후에 배달된 경우를 뜻하며, 송달기간에서는 공휴일과 우정사업본부장이 배달하지 않기로 정한 날 등이 제외된다.

핵심 구분

우정사업본부의 국내우편 손해배상 기준에 따르면 준등기는 지연배달 손해배상이 없다. 등기통상은 D+5일 배달분부터 우편요금과 등기취급 수수료, 등기소포는 D+3일 배달분부터 우편요금과 등기취급 수수료, 익일특급은 D+3일 배달분부터 우편요금과 국내특급 수수료를 배상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준등기는 분실·훼손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의 손해배상 대상이지만 지연배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없다.
틀린 표현: ‘D+3일 배달분부터 우편요금’
올바른 표현: 준등기는 지연배달 손해배상이 없다.

② O
등기통상은 D+5일 배달분부터 우편요금과 등기취급 수수료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된다.

③ X
등기소포의 지연배달 기준일은 D+3일이 맞지만, 배상 범위에서 등기취급 수수료를 빠뜨렸다.
틀린 표현: ‘우편요금’
올바른 표현: D+3일 배달분부터 우편요금과 등기취급 수수료를 배상한다.

④ X
익일특급은 D+1일이 아니라 D+3일 배달분부터 지연배달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
틀린 표현: ‘D+1일 배달분부터’
올바른 표현: D+3일 배달분부터 우편요금과 국내특급 수수료를 배상한다.

오답 포인트

③은 D+3일이라는 기준일만 보면 맞아 보이지만 등기취급 수수료가 누락되어 있다. ④는 ‘익일’이라는 명칭 때문에 D+1일부터 배상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지연배달 손해배상은 D+3일 배달분부터 적용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선지에서 우편물 종류, 지연배달 기준일, 배상 항목을 따로 확인한다. 준등기는 지연배상 없음, 등기통상은 D+5일, 등기소포와 익일특급은 D+3일로 구분하고, 등기우편은 등기취급 수수료, 익일특급은 국내특급 수수료까지 포함되는지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준등기 지연배상 없음, 등기통상 5일, 등기소포·익일특급 3일이다.

NoteBase

9. 국내 계약등기우편물의 부가취급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편주소 정보제공은 수취인의 동의를 받아 발송인에게 바뀐 우편주소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부가취급수수료는 1,000원이다.

② 착불배달 맞춤형 계약등기우편물이 반송되는 경우, 착불요금을 제외한 우편요금(등기취급수수료 포함)과 반송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회신우편의 취급대상은 발송인이 사전에 배달과 회신에 대한 사항을 계약관서와 협의하여 정한 계약등기우편물로 부가취급수수료는 1,500원이다.

④ 반송수수료 사전납부 우편물 접수 시 우편요금 반송률(최초 1년은 등기우편물 반환율에 0.5% 가산)을 적용한 반송수수료를 합산하여 납부한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계약등기우편물의 부가취급 서비스별 이용 방법과 수수료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착불배달 우편물이 반송될 때 일반형과 맞춤형에 징수하는 금액이 다르다는 점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계약등기우편은 우체국과 발송인이 별도로 계약하여 배달하고, 배달 결과를 발송인에게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주는 등기우편이다. 맞춤형 계약등기는 신분증류처럼 배달 과정에서 특별한 관리나 서비스가 필요한 우편물에 표준요금을 적용하는 상품이다.

핵심 구분

우정사업본부의 계약등기 부가취급 기준에 따르면, 반환된 일반형 착불배달 계약등기우편물에는 착불요금을 제외한 우편요금과 반환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반면 맞춤형 계약등기우편물에는 착불요금을 제외한 우편요금만 징수하고 반환취급수수료는 더하지 않는다. 부가취급수수료는 우편주소 정보제공 1,000원, 회신우편 1,500원이며, 반환취급 사전납부액은 반환취급수수료에 반환율을 곱하여 정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우편주소 정보제공은 주소 이전 등으로 수취인의 우편주소가 바뀐 경우 우편물을 변경된 주소지로 전송하고, 배달 시 수취인의 동의를 받아 변경된 주소정보를 발송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부가취급수수료는 1,000원이다.

② X
맞춤형 계약등기우편물이 착불배달되지 못하고 반송되는 경우 발송인에게 착불요금을 제외한 우편요금만 징수하며, 반환취급수수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우편요금과 반송수수료를 징수한다.
올바른 표현: 착불요금을 제외한 우편요금만 징수한다.

③ O
회신우편은 발송인이 계약 우편관서와 배달 및 회신에 관한 상세 사항을 미리 협의한 계약등기우편물이다. 수취인에게 대면 배달하면서 서명·날인이나 서류를 받아 발송인 또는 지정된 자에게 회신하며, 부가취급수수료는 1,500원이다.

④ O
반송수수료 사전납부는 우편물 접수 시 우편요금에 반송률을 적용한 반송수수료를 합산하여 납부하는 방식이다. 최초 1년에는 해당 기준에 따른 등기우편물 반환율에 0.5%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오답 포인트

②에서 일반형 착불배달 계약등기우편물의 반송 처리 기준을 맞춤형에도 그대로 적용하기 쉽다. 일반형은 우편요금과 반환취급수수료를 징수하지만, 맞춤형은 반환취급수수료가 면제되어 우편요금만 징수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착불배달 우편물의 반송 문제에서는 먼저 일반형인지 맞춤형인지 확인한다. 맞춤형이면 착불수수료를 제외한 우편요금만, 일반형이면 그 우편요금에 반환취급수수료까지 더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맞춤형 착불 반송은 우편요금만, 일반형 착불 반송은 우편요금과 반환취급수수료이다. 주소정보 1,000원, 회신우편 1,500원이다.

NoteBase

10. 운송용기(운반차)에 적재할 우편물이 여러 종류일 경우, 순서에 맞게 나열한 것은?

① 일반소포 → 일반통상 → 등기소포 → 등기통상 → 중계우편물
② 일반소포 → 등기소포 → 일반통상 → 등기통상 → 중계우편물
③ 중계우편물 → 일반소포 → 일반통상 → 등기소포 → 등기통상
④ 중계우편물 → 일반소포 → 등기소포 → 일반통상 → 등기통상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운송용기(운반차)에 여러 종류의 우편물을 함께 적재할 때 적용하는 우편물 종류별 순서를 묻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일반소포
2. 등기소포
3. 일반통상
4. 등기통상
5. 중계우편물

소포류를 일반소포, 등기소포의 순서로 먼저 적재하고, 통상우편물을 일반통상, 등기통상의 순서로 적재한 뒤 중계우편물을 마지막에 적재한다. 따라서 소포류 → 통상우편물 → 중계우편물이라는 큰 흐름과 각 우편물군 안의 일반 → 등기 순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일반통상을 등기소포보다 먼저 둔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일반소포 → 등기소포 → 일반통상 → 등기통상 → 중계우편물이다.

② O — 일반소포와 등기소포를 먼저 적재하고, 일반통상과 등기통상을 이어 적재한 다음 중계우편물을 마지막에 두었으므로 올바른 순서이다.

③ X — 마지막에 적재해야 하는 중계우편물을 맨 앞에 둔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일반소포 → 등기소포 → 일반통상 → 등기통상 → 중계우편물이다.

④ X — 중계우편물을 맨 앞에 둔 부분과 등기소포를 일반통상 뒤에 둔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일반소포 → 등기소포 → 일반통상 → 등기통상 → 중계우편물이다.

오답 포인트

①은 일반통상과 등기소포의 선후를 바꾸었고, ③·④는 중계우편물을 처음에 배치했다. 특히 중계우편물이 마지막이라는 점과 소포류가 통상우편물보다 먼저라는 점을 놓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소포류 → 통상우편물 → 중계우편물의 세 덩어리로 나누고, 소포류와 통상우편물 안에서는 각각 일반 → 등기의 순서인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소포 먼저, 통상 다음, 중계 마지막이며 각 군은 일반 다음 등기이다.

NoteBase

11. 우편물을 기계구분 우편물과 수구분 우편물로 분류할 경우, 기계구분할 수 없는 우편물은?

① 우편번호 앞쪽에 '(우)'라고 표시한 경우

② 주소와 우편번호를 적정한 위치에 선명하게 인쇄한 경우

③ 봉함된 상태이고 내용물의 글씨가 봉투에 비치지 않는 경우

④ 봉투 색상이 흰색이고 표면이 울퉁불퉁하지 않고 균일한 경우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우편물의 우편번호 표기, 봉함 상태, 표면 상태가 자동 기계구분에 적합한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기계구분 우편물은 기계가 주소와 우편번호를 판독하고 이송할 수 있도록 표시 위치가 정확하고, 글자가 선명하며, 우편물이 완전히 봉함되고 표면이 평평하고 균일한 우편물이다. 우편번호 판독 영역에는 우편번호 외의 불필요한 문자를 표시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우편번호 앞쪽에 '(우)'를 표시하면 우편번호 판독 영역에 불필요한 문자가 추가되어 기계가 우편번호만 정확히 인식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계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② X
주소와 우편번호를 정해진 위치에 선명하게 인쇄하면 기계가 정보를 판독하기 쉬우므로 기계구분할 수 있다.
틀린 판단: 기계구분할 수 없는 경우이다.
올바른 판단: 주소와 우편번호를 적정한 위치에 선명하게 인쇄한 경우는 기계구분할 수 있는 경우이다.

③ X
우편물이 완전히 봉함되어 있고 내용물이 밖으로 비치거나 튀어나오지 않으면 이송과 판독을 방해하지 않으므로 기계구분할 수 있다.
틀린 판단: 기계구분할 수 없는 경우이다.
올바른 판단: 봉함 상태가 양호하고 내용물의 글씨가 봉투에 비치지 않는 경우는 기계구분할 수 있는 경우이다.

④ X
봉투 표면이 울퉁불퉁하지 않고 균일하면 기계 이송과 판독에 적합하다. 회색 봉투도 기계판독을 방해하지 않는 밝기와 균일한 표면을 갖추면 기계구분할 수 있다.
틀린 판단: 회색 봉투이므로 기계구분할 수 없는 경우이다.
올바른 판단: 봉투 색상이 기계판독을 방해하지 않고 표면이 평평하고 균일한 경우는 기계구분할 수 있는 경우이다.

오답 포인트

③과 ④의 '비치지 않는', '울퉁불퉁하지 않고 균일한'은 모두 기계처리에 유리한 조건이다. 부정 표현이 들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계구분 불가 사유로 판단하면 안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우편번호 영역의 불필요한 문자, 흐린 인쇄, 불완전한 봉함, 돌출되거나 불균일한 표면처럼 판독·이송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방해 요소가 있으면 수구분 대상이고, 표시가 정확하고 표면과 봉함 상태가 양호하면 기계구분 대상이다.

암기 포인트

기계구분은 '우편번호만 정확히, 글자는 선명하게, 봉함과 표면은 평평하게'로 기억한다.

NoteBase

12. 운송용기의 개봉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계·인수가 끝난 우편물은 등기우편, 익일특급 순으로 개봉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부가취급 우편물을 담은 운송용기를 개봉할 때 책임자나 책임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참관해야 한다.

③ 부가취급 우편물을 담은 운송용기를 개봉할 때 담당자는 송달증의 기록명세와 우편물의 등기번호 및 통수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④ 개봉이 끝난 운송용기는 운송용기 관리지침에 따르고, 우편자루는 뒤집어서 남은 우편물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도착한 운송용기의 개봉 우선순위와 부가취급우편물 확인 절차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익일특급 등기우편물을 그 외 등기우편물보다 먼저 개봉한다는 점이다.

용어 풀이

운송용기 개봉작업은 도착검사가 끝난 운송용기의 국명표를 제거하고 우편물을 꺼내 송달증 기록과 현품을 확인한 뒤 빈 용기를 정리하는 절차이다.

핵심 구분

현행 우편업무 규정 제223조에 따르면 특급우편물을 담은 운송용기는 보통우편물을 담은 운송용기보다 우선 처리한다. 따라서 개봉 순서는 익일특급 등기우편물, 그 외 등기우편물 순이다. 부가취급우편물 운송용기는 책임자 또는 책임자가 지정한 사람의 참관 아래 송달증 기록명세와 우편물의 등기번호·통수를 대조하며, 개봉 후 우편자루는 뒤집어 잔류 우편물이 없는지 확인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익일특급 등기우편물을 그 외 등기우편물보다 먼저 개봉해야 하는데, 선지는 그 순서를 반대로 제시했다.
틀린 표현: '등기우편, 익일특급 순서'
올바른 표현: '익일특급 등기우편물, 그 외 등기우편물 순서'

② O
부가취급우편물을 담은 운송용기를 개봉할 때에는 책임자 또는 책임자가 지정한 사람이 참관해야 한다.

③ O
담당자는 부가취급우편물 송달증의 기록명세와 현품의 등기번호 및 통수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④ O
개봉이 끝난 운송용기는 운송용기 관리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우편자루는 뒤집어서 남은 우편물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①의 '등기우편, 익일특급'은 우선순위를 뒤집은 표현이다. '특급 우선 처리'라는 원칙을 놓치면 일반적인 등기우편을 먼저 개봉한다고 오인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운송용기 개봉 문제는 '특급 우선 → 책임자 참관 → 송달증과 현품 대조 → 빈 자루 확인'의 흐름으로 판단한다. 순서를 묻는 선지에서는 익일특급이 다른 등기우편보다 앞서는지 먼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개봉은 '특급 먼저, 참관·대조, 자루 뒤집기'로 기억한다.

NoteBase

13. <보기>에서 등기취급 우편물의 정당 수령인을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ㄱ.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주소지에서 만난 동거인
ㄴ. 대리수령인으로 지정되어 우편관서에 등록된 사람
ㄷ.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주소지(회사)에서 만난 같은 직장 근무자
ㄹ. 수취인과 같은 집배구에 있고 발송인의 배달동의를 받은 무인 우편물 보관함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등기취급 우편물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무인우편물보관함 배달의 동의 주체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동거인·동일 직장 근무자·신고된 대리수령인의 수령 가능 여부와 발송인·수취인의 구별이다.

용어 풀이

정당 수령인은 등기우편물을 적법하게 인도받고 수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다. 여기에는 수취인뿐 아니라 일정한 동거인, 동일 직장 근무자, 신고된 대리수령인 등이 포함된다.

핵심 구분

「우편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은 등기우편물을 수취인, 동거인(동일 직장 근무자 포함) 또는 같은 영 제43조의 일정한 수령인에게 수령 사실을 확인받아 배달하도록 한다. 같은 영 제43조 제5호에 따라 수취인이 동일 집배구 거주자를 대리수령인으로 지정하여 배달우편관서에 신고한 경우 그 대리수령인도 받을 수 있다. 무인우편물보관함 배달은 같은 영 제43조 제8호에 따라 발송인이 아니라 수취인의 신청 또는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ㄱ, ㄴ, ㄷ은 옳고 ㄹ은 틀리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과 ㄷ은 정당 수령인에 해당하지만, 신고된 대리수령인인 ㄴ도 정당 수령인에 해당하므로 불완전한 조합이다.
틀린 표현: ㄱ, ㄷ
올바른 표현: ㄱ, ㄴ, ㄷ

② X
ㄱ은 옳지만 ㄹ은 무인우편물보관함 배달의 동의 주체를 발송인으로 잘못 제시했다. 또한 옳은 ㄴ과 ㄷ이 빠졌다.
틀린 표현: ㄱ, ㄹ
올바른 표현: ㄱ, ㄴ, ㄷ

③ O
ㄱ의 주소지에서 만난 동거인, ㄴ의 우편관서에 신고된 대리수령인, ㄷ의 같은 직장 근무자는 모두 등기우편물의 정당 수령인에 해당한다. ㄹ은 제외되므로 ㄱ, ㄴ, ㄷ의 조합이 정확하다.

④ X
ㄴ과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고, 정당 수령인에 해당하는 ㄱ이 빠졌다.
틀린 표현: ㄴ, ㄷ, ㄹ
올바른 표현: ㄱ, ㄴ, ㄷ

오답 포인트

ㄹ의 '발송인의 배달동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함정이다. 무인우편물보관함을 실제 이용하고 우편물을 받는 쪽은 수취인이므로 필요한 것은 수취인의 신청 또는 동의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등기우편물 수령인 문제에서는 먼저 수취인과 생활·근무 관계가 있는 동거인 및 동일 직장 근무자를 확인하고, 대리수령인은 수취인의 지정과 배달우편관서 신고 여부를 확인한다. 무인우편물보관함이 나오면 동의 주체를 수취인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등기 수령은 동거인·직장동료·신고된 대리인까지, 무인함 동의는 발송인이 아니라 수취인이다.

NoteBase

14.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제우편물 취급우체국은?

< 보 기 >

ㄱ. 국제우편물의 접수와 배달 업무를 수행
ㄴ. 국제우편물을 직접 외국으로 발송하고, 외국에서 오는 우편물을 받는 업무를 수행
ㄷ. 관세청장이 지정한 우체국으로 세관공무원이 주재하거나 파견되어 국제우편물의 수출입에 관한 세관검사를 실시

①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② 인천해상교환우체국
③ 부산국제우편물류센터
④ 국제우편물류센터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국제우편물 취급우체국의 기능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통상국·교환국·통관국의 기능을 구별하고 세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관서를 찾는 것이다.

용어 풀이

통상국 = 국제우편물의 접수와 배달을 담당하는 우체국이다.
교환국 = 국제우편물을 외국으로 직접 발송하고 외국에서 오는 우편물을 직접 받는 우체국이다.
통관국 = 관세청장이 지정하고 세관공무원이 주재하거나 파견되어 국제우편물의 수출입 세관검사를 실시하는 우체국이다.

핵심 구분

ㄱ은 통상국, ㄴ은 교환국, ㄷ은 통관국의 기능을 뜻한다. 국제우편물류센터는 통상국·교환국·통관국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므로 세 조건의 교집합에 해당한다. 현행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설치 규정에서도 '국제우편물류센터'와 '부산국제우체국'을 서로 다른 공식 관서 명칭으로 두고 있으므로, ③의 '부산국제우편물류센터'는 정확한 명칭이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는 광역 우편물의 구분·발송·운송 등을 담당하는 물류센터이며, 외국 우정당국과 국제우편물을 직접 주고받는 교환국이 아니므로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
- 틀린 표현: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가 ㄱ·ㄴ·ㄷ을 모두 수행한다.
- 올바른 표현: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는 세 기능을 모두 겸하는 국제우편물 취급우체국이 아니다.

② X
- 인천해상교환우체국은 외국과 해상 국제우편물을 직접 주고받는 교환국이며 세관검사를 하는 통관국이지만, 일반 고객의 국제우편물 접수와 배달을 담당하는 통상국 기능은 수행하지 않으므로 ㄱ을 충족하지 않는다.
- 틀린 표현: 인천해상교환우체국이 ㄱ·ㄴ·ㄷ을 모두 수행한다.
- 올바른 표현: 인천해상교환우체국은 교환국·통관국 기능을 수행하지만 통상국 기능은 수행하지 않는다.

③ X
- '부산국제우편물류센터'는 공식 관서 명칭이 아니다. 세 기능을 겸하는 부산 지역 관서는 '부산국제우체국'이다.
- 틀린 표현: 부산국제우편물류센터
- 올바른 표현: 부산국제우체국

④ O
- 국제우편물류센터는 국제우편물의 접수·배달, 외국과의 직접 교환, 세관검사를 모두 수행하므로 ㄱ·ㄴ·ㄷ을 모두 충족한다.

오답 포인트

②가 '교환'과 '통관'을 모두 한다는 사실만 보고 정답으로 고르기 쉽지만, 문제는 세 조건을 모두 요구한다. 또한 ③의 '부산국제우편물류센터'와 정확한 명칭인 '부산국제우체국'을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접수·배달은 통상국, 외국과 직접 발송·수취는 교환국, 세관공무원의 수출입 검사는 통관국으로 바꾸어 읽는다. 그다음 각 관서가 세 기능을 모두 갖추었는지와 관서 명칭이 정확한지를 함께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국제우편물류센터 = 통상국 + 교환국 + 통관국이다. 부산은 '부산국제우체국'이 정확한 명칭이다.

NoteBase

15. <보기>에서 국제우편 인쇄물로 접수가 가능한 것의 총 개수는?

< 보 기 >

ㄱ. 서적	ㄴ. 정기간행물	ㄷ. CD	ㄹ. 비디오테이프
ㅁ. OCR	ㅂ. 포장박스	ㅅ. 봉인한 서류	ㅇ. 홍보용 팸플릿
ㅈ. 잡지	ㅊ. 상업광고물	ㅋ. 달력	

① 4개 ② 5개 ③ 6개 ④ 7개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국제우편 인쇄물로 접수할 수 있는 물품과 접수할 수 없는 물품을 구분하여 가능한 항목의 수를 세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국제우편 인쇄물은 종이·판지 등 일반적으로 인쇄에 쓰이는 재료에 여러 개의 동일한 사본으로 생산된 정보 전달용 복사물이다. 개봉하여 발송해야 하므로 봉인한 서류는 해당하지 않는다.
접수 가능: ㄱ 서적, ㄴ 정기간행물, ㅇ 홍보용 팸플릿, ㅈ 잡지, ㅊ 상업광고물, ㅋ 달력 → 모두 6개이다.
접수 불가: ㄷ CD, ㄹ 비디오테이프, ㅁ OCR, ㅂ 포장박스, ㅅ 봉인한 서류이다. CD·비디오테이프·OCR은 종이·판지 형태의 인쇄물이 아니고, 포장박스는 정보 전달용 인쇄물이 아닌 포장 용기이며, 봉인한 서류는 개봉 발송 요건에 맞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 ‘4개’가 틀린 표현이다. 접수 가능한 것은 ㄱ, ㄴ, ㅇ, ㅈ, ㅊ, ㅋ의 6개이므로 올바르게는 ‘6개’이다.
② X — ‘5개’가 틀린 표현이다. 종이·판지 형태의 정보 전달용 인쇄물에 해당하는 항목을 세면 6개이므로 올바르게는 ‘6개’이다.
③ O — 서적, 정기간행물, 홍보용 팸플릿, 잡지, 상업광고물, 달력의 총 6개가 국제우편 인쇄물로 접수 가능하다.
④ X — ‘7개’가 틀린 표현이다. CD, 비디오테이프, OCR, 포장박스, 봉인한 서류는 제외되어 접수 가능한 것은 6개이므로 올바르게는 ‘6개’이다.

오답 포인트

포장박스가 판지로 만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인쇄물에 포함하거나, 봉인한 서류를 일반적인 문서라는 이유로 포함하면 개수를 잘못 세게 된다. 재질만 볼 것이 아니라 정보 전달용 인쇄물인지와 개봉 발송이 가능한지를 함께 판단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종이·판지 등의 형태로 인쇄된 정보 전달물인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개봉 발송 요건에 맞는지 확인한다. 이 기준에 따라 전자매체·장치, 단순 포장 용기, 봉인한 서류를 제외한 뒤 남은 항목의 수를 센다.

암기 포인트

가능 6종은 '서적·정기간행물·팸플릿·잡지·상업광고물·달력', 불가능 5종은
'CD·비디오테이프·OCR·포장박스·봉인서류'이다.

NoteBase

16. 국제우편 소형포장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용품 검사를 위해 쉽게 열어볼 수 있도록 봉하여야 한다.

② 우편물의 내부 또는 외부에 상품송장(Invoice)을 첨부할 수 있다.

③ 내용품 가격이 300SDR 이하인 경우 CN22, 300SDR을 초과할 경우에는 CN23을 첨부한다.

④ 국제통상우편물에 속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우편물이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국제우편 소형포장물의 포장·통관서류·분류 기준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소형포장물이 만국우편협약에 따른 국제통상우편물의 한 종류라는 점과 내용품 가격에 따른 CN22·CN23의 구분을 아는 것이다.

용어 풀이

소형포장물 = 2kg 이하의 작고 가벼운 물품을 간편하게 보내는 국제우편의 한 종류이다.
SDR = 국제통화기금이 정한 특별인출권으로, 국제우편에서는 내용품 가격 등의 기준 단위로 사용된다.
CN22·CN23 = 세관검사를 위해 내용품의 종류·수량·가격 등을 신고하는 서식이다. CN22는 간이 세관표지이고 CN23은 보다 상세한 세관신고서이다.

핵심 구분

소형포장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하여 별도로 지정하는 우편물이 아니라 만국우편협약에 따른 국제우편의 한 종류이다. 현행 국제우편 취급기준상 소형포장물은 내용물 확인을 위해 개봉할 수 있고, 통관에 필요한 송장 등의 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내용품 가격이 300SDR 이하이면 CN22를, 300SDR을 초과하면 CN23을 첨부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소형포장물은 내용품 검사에 지장이 없도록 포장해야 한다. 특별한 봉함조건은 요구되지 않으며 내용물 확인을 위해 개봉할 수 있으므로, 쉽게 열어 검사할 수 있도록 봉한다는 설명은 옳다.

② O
상품송장은 통관에 필요한 서류이므로 세관신고서와 함께 첨부할 수 있다. 우편물의 취급 방식에 따라 내부에 동봉하거나 외부에 부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③ O
내용품 가격이 300SDR 이하이면 세관표지 CN22를, 300SDR을 초과하면 세관신고서 CN23을 첨부한다. 가격 기준과 서식의 연결이 옳다.

④ X
소형포장물이 국제통상우편물에 속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우편물이라는 부분은 틀리다.
틀린 표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우편물이다.
올바른 표현: 소형포장물은 만국우편협약에 따른 국제우편의 한 종류로서, 2kg 이하의 작고 가벼운 물품을 간편하게 보내는 우편물이다.

오답 포인트

④의 앞부분인 '국제통상우편물에 속한다'가 맞기 때문에 문장 전체를 옳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뒤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다'는 지정 근거가 잘못되었다. 한 선지 안에서 앞부분과 뒷부분을 각각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소형포장물 문제에서는 먼저 '만국우편협약에 따른 2kg 이하 국제우편'이라는 성격을 확인한다. 이어서 통관서식은 '300SDR 이하 CN22, 300SDR 초과 CN23'으로 연결하고, 장관의 별도 필요 인정·고시라는 문구가 붙으면 지정 근거가 맞는지 따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소형포장물은 만국우편협약상 국제우편이며, 300SDR 이하 CN22·초과 CN23이다.

NoteBase

17. <보기>에서 사전통관정보제공에 따른 필수 통관정보항목의 총 개수는?

< 보 기 >

ㄱ. 발송인 성명, 상세주소, 우편번호	ㄴ. 발송인 전화번호
ㄷ. 발송인 이메일	ㄹ. 수취인 성명, 상세주소, 우편번호
ㅁ. 수취인 전화번호	ㅂ. 수취인 이메일
ㅅ. 내용품유형	ㅇ. 내용품명
ㅈ. HS Code	ㅊ. 순중량
ㅋ. 개수	ㅌ. 생산지
ㅍ. 가격	

① 9개 ② 10개 ③ 11개 ④ 12개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사전통관정보의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을 구분하여 필수 항목의 수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필수 통관정보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정보이고, 선택 정보는 필요에 따라 등록하는 정보이다.
보기에서 필수인 것은 ㄱ 발송인 성명·상세주소·우편번호, ㄴ 발송인 전화번호, ㄹ 수취인 성명·상세주소·우편번호, ㅅ 내용품유형, ㅇ 내용품명, ㅈ HS Code, ㅊ 순중량, ㅋ 개수, ㅌ 생산지, ㅍ 가격으로 모두 10개이다.
ㄷ 발송인 이메일, ㅁ 수취인 전화번호, ㅂ 수취인 이메일은 선택 항목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필수 항목은 9개가 아니라 10개이다. 올바르게는 '10개'이다.
② O — 13개 보기 중 선택 항목인 ㄷ·ㅁ·ㅂ 3개를 제외하면 필수 항목은 10개이다.
③ X — 필수 항목은 11개가 아니라 10개이다. 올바르게는 '10개'이다.
④ X — 필수 항목은 12개가 아니라 10개이다. 올바르게는 '10개'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수취인 전화번호는 중요 안내를 위해 필수처럼 기재하도록 안내될 수 있지만, 통관정보 등록 구분상 선택 항목이다. 이를 필수로 세면 11개가 되어 ③을 고르기 쉽다. 발송인 이메일과 수취인 이메일도 선택 항목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전체 항목을 하나씩 세기보다 선택 항목인 '발송인 이메일·수취인 전화번호·수취인 이메일' 3개를 먼저 제외한다. 전체 13개에서 3개를 빼면 필수 항목은 10개이다.

암기 포인트

선택 3개는 발송인 이메일, 수취인 전화번호, 수취인 이메일이며, 나머지 10개는 필수이다.

NoteBase

18. <보기>의 국제특급우편물(EMS) 보험취급 수수료 계산으로 옳은 것은?

< 보 기 >

ㄱ. 도착국: 일본　　ㄴ. 중량: 12kg
ㄷ. 우편요금: 67,000원　　ㄹ. 물품가(보험가): 120,000원

① 최초 114,300원까지 2,800원 + 500원
② 최초 114,500원까지 2,800원 + 500원
③ 최초 114,300원까지 2,800원 + 550원
④ 최초 114,500원까지 2,800원 + 550원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EMS 보험취급 수수료의 최초 보험가액 기준과 초과 구간의 추가 수수료를 정확히 적용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물품가(보험가) 120,000원이다.
구해야 할 값: EMS 보험취급 수수료이다.
적용 기준: 보험가액 최초 114,300원까지 2,800원이고, 114,300원을 초과하면 550원이 추가된다.
주의할 조건: 도착국 일본, 중량 12kg, 우편요금 67,000원은 이 보험취급 수수료 계산에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할 공식

보험취급 수수료 = 최초 114,300원까지의 기본 수수료 2,800원 + 초과 구간의 추가 수수료 550원이다.
물품가 120,000원이 최초 기준액 114,300원을 초과하므로 추가 수수료를 한 번 더해야 한다.

계산 과정

1. 보험가 120,000원은 최초 기준액 114,300원을 5,700원 초과한다.
2. 최초 114,300원까지의 수수료는 2,800원이다.
3. 초과분에 대한 추가 수수료 550원을 더하면 2,800원 + 550원 = 3,350원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최초 114,300원까지’는 맞지만 추가 수수료를 500원으로 제시한 부분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최초 114,300원까지 2,800원 + 550원’이다.
② X — 최초 기준액 114,500원과 추가 수수료 500원이 모두 틀리다. 올바르게는 ‘최초 114,300원까지 2,800원 + 550원’이다.
③ O — 최초 114,300원까지 2,800원이고, 보험가 120,000원이 이를 초과하므로 550원을 추가한다. 총수수료는 3,350원이다.
④ X — 추가 수수료 550원은 맞지만 최초 기준액을 114,500원으로 제시한 부분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최초 114,300원까지 2,800원 + 550원’이다.

오답 포인트

선지들은 최초 기준액의 끝자리 114,300원과 114,500원, 추가 수수료 550원과 500원을 서로 바꾸어 놓았다. 또한 우편요금 67,000원이나 중량 12kg을 보험취급 수수료 계산에 끌어들이는 것도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물품가가 최초 기준액 114,300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고, 초과하면 기본 2,800원에 550원을 추가한다. 보험취급 수수료만 묻는 경우 우편요금·중량·도착국은 별도 조건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EMS 보험료는 ‘114,300원·2,800원·초과 시 550원’으로 묶어 기억한다.

NoteBase

19. <보기>의 국제우편물이 일부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 금액 계산으로 옳은 것은?

< 보 기 >

ㄱ. 보통소포우편물(항공)　　ㄴ. 중량: 10kg

ㄷ. 우편요금: 52,000원　　ㄹ. 물품가: 300,000원

① 52,500원 + 70,800원 금액 범위 내(123,300원)의 실손해액

② 52,500원 + 78,700원 금액 범위 내(131,200원)의 실손해액

③ 70,000원 + 70,800원 금액 범위 내(140,800원)의 실손해액

④ 70,000원 + 78,700원 금액 범위 내(148,700원)의 실손해액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국제 보통소포우편물이 일부 훼손된 경우의 손해배상 한도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우편물 종류에 맞는 기본액과 중량별 가산액을 적용하고, 일부 훼손에는 납부한 우편요금을 더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용어 풀이

실손해액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을 뜻한다. 손해배상액은 정해진 한도를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도 범위 안에서 실제 손해액만 지급한다.

핵심 구분

우정사업본부의 국제우편물 손해배상 기준상 보통소포우편물이 일부 분실·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의 배상액은 70,000원에 1kg당 7,870원을 합산한 금액 범위 내의 실손해액이다. 전부 분실·도난·훼손과 달리 일부 훼손에는 납부한 우편요금을 더하지 않는다.

계산 과정

중량 가산액은 7,870 × 10 = 78,700이므로 78,700원이다. 따라서 손해배상 한도는 70,000 + 78,700 = 148,700이므로 148,700원이다. 물품가 300,000원이 이 한도보다 크더라도 실제 지급액은 148,700원 범위 내의 실손해액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보통소포우편물의 기본액을 52,500원으로 잡았고, 10kg의 중량 가산액도 70,800원으로 잘못 계산하였다. 틀린 표현: '52,500원 + 70,800원'. 올바른 표현: '70,000원 + 78,700원 금액 범위 내의 실손해액'이다.
② X — 10kg의 중량 가산액 78,700원은 맞지만, 보통소포우편물의 기본액은 52,500원이 아니라 70,000원이다. 틀린 표현: '52,500원'. 올바른 표현: '70,000원'이며, 한도는 148,700원이다.
③ X — 보통소포우편물의 기본액 70,000원은 맞지만, 1kg당 7,870원을 10kg에 적용한 가산액은 70,800원이 아니라 78,700원이다. 틀린 표현: '70,800원'. 올바른 표현: '78,700원'이며, 한도는 148,700원이다.
④ O — 70,000원에 1kg당 7,870원의 10kg분인 78,700원을 더하면 148,700원이다. 일부 훼손이므로 납부한 우편요금 52,000원은 별도로 더하지 않고, 148,700원 범위 내의 실손해액을 배상한다.

오답 포인트

52,500원은 등기우편물에 적용되는 한도액이므로 보통소포우편물의 기본액과 혼동하면 ①이나 ②를 고르게 된다. 또한 1kg당 7,870원에 10kg을 곱한 값은 78,700원이며, 일부 훼손에는 우편요금이 가산되지 않는다는 점도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우편물 종류와 손해 형태가 전부 손해인지 일부 손해인지 확인한다. 보통소포의 일부 훼손이면 '70,000원 + 1kg당 7,870원 × 중량'으로 한도를 계산한 뒤, 그 한도와 실제 손해액을 비교한다.

암기 포인트

국제 보통소포 일부 훼손은 '70,000원 + 1kg당 7,870원', 우편요금은 가산하지 않는다.

NoteBase

20. 국제우편 요금감액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특급 요금감액은 계약특급, 수시특급, 일괄특급으로 나눌 수 있다.

② 특별감액의 장기이용고객 조건에 해당할 경우, 3%의 요금감액률을 적용한다.

③ 계약국제특급의 18% 이상 감액률은 우정사업본부장의 승인 후 적용한다.

④ 발송비용절감 요금감액은 EMS, EMS프리미엄, K-Packet, 소형포장물, 한·중해상특송우편물에 대해서 적용한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국제우편 요금감액의 유형과 특별감액 요건별 감액률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기본 요금감액과 특별감액을 구별하고, 특별감액도 세부 요건마다 감액률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요금감액은 일정한 이용금액이나 비용 절감 등의 요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우편요금의 일부를 할인하는 제도이다. 특별감액은 기본 감액에 장기이용, 발송비용 절감 등 별도의 요건을 더 충족할 때 추가로 적용되는 감액이다.

핵심 구분

국제특급 요금감액은 계약특급·수시특급·일괄특급으로 구분한다. 특별감액의 장기이용 감액률은 모든 장기이용고객에게 일률적으로 3%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과 직전 계약기간의 이용금액 요건에 따라 1%p 이하 또는 2%p 이하를 적용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국제특급 요금감액은 이용 형태에 따라 계약특급, 수시특급, 일괄특급으로 나눌 수 있다.

② X
장기이용 특별감액은 장기이용 조건을 충족했다는 이유만으로 3%를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직전 계약기간 이용금액이 600만 원 이상이면 1%p 이하, 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고 직전 계약기간 이용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2%p 이하가 적용된다.
틀린 표현: 3%의 요금감액률을 적용한다.
올바른 표현: 장기이용 요건에 따라 1%p 이하 또는 2%p 이하의 요금감액률을 적용한다.

③ O
계약국제특급의 감액률이 18% 이상인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적용한다. 일반적인 이용금액별 감액률과 승인 절차를 구별해야 한다.

④ O
발송비용 절감 특별감액의 대상 우편물에는 EMS, EMS프리미엄, K-Packet, 소형포장물, 한·중 해상특송우편물이 포함된다.

오답 포인트

②의 ‘3%’는 다른 특별감액률과 혼동하게 하는 표현이다. 장기이용은 단일 감액률이 아니라 계약기간과 직전 계약기간 이용금액에 따라 1%p 이하와 2%p 이하로 나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국제특급의 기본 구분이 계약·수시·일괄인지 확인하고, 특별감액 선지는 감액 사유별로 대상 우편물, 요건, 감액률을 각각 대응시켜 판단한다. 장기이용 선지에서는 계약기간과 이용금액이 함께 제시되었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국제특급은 계약·수시·일괄, 장기이용 특별감액은 1%p 이하 또는 2%p 이하이다.

NoteBase